

의안번호	2213170
의 퇴 인	임이자 의원
회 답 일	2025. 10. 16.
추 계 번호	25A5290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 수립 등을 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300만원(연평균 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43	-	-	-	-	43	9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취약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취약산업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2	안 제4조 (조사·연구 등)	○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재량 규정
3	안 제5조 (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의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 취약산업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5년을 단위로 한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정된 금융지원계획을 공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연 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조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취약산업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 기업의 경영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이행,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기술·판로 등 해외진출전략 등에 대한 정보제공·상담 등	재량 규정
5	안 제8조 (기금의 설치)	○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한다.	의무 규정
6	안 제9조 (기금의 재원)	○ 기금의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정부의 출연금,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등	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재정수반요인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의 책무)	×	· 선언적·권고적 규정
2	안 제4조(조사·연구 등)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3	안 제5조(취약산업금융지원계획의 수립)	○	－
4	안 제7조(취약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5	안 제8조(기금의 설치)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6	안 제9조(기금의 재원)	×	· 구체적 사업 규모 등 추정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중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함에 따라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제정안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된 재량사업의 경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업 범위·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근거가 없는 관계로 본 추계에서 제외
- 제정안에 따른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계획을 수립은 산업지원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5년 단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므로 추계기간 동안 재정소요액은 2026년 한 해만 발생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라 5년을 단위로 하는 취약산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계획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4,300만원(연평균 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
 - 제정안과 유사한 산업지원 관련 계획 수립에 소요된 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소요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표 2] 제정안과 유사한 산업지원 관련 계획 수립연구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시기	금액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경기도 안양시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2023	20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충청북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19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연구원	2021	48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	세종특별자치시	(재)대전세종연구원	2020	84
평균				43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PRISM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3] 제정안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비용: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43	-	-	-	-	43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재정수반요인 중 현시점에서 추계가 가능한 일부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653	choi1009@assembly.go.kr